

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47
----------	------

2017년 8월 30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8월 16일, 김진영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8월 3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진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전문 분야 별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,
- 준치실익이 없는 실무협의회 대신에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함(안 제7조).
- (2)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,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기존 실무협의회 대신 성능개선위원회의 상위 의결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 투입 등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7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능개선위원회(비상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능개선위원회(상설) •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제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무협의회(비상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(비상설)

■ 성능개선위원회 상설화 및 분과위원회 추가의 건(안 제7조)

-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는 5년 단위로 작성되는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‘일시적으로’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
- 본 개정안은 이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, 현행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이 5년 단위의 주기성을 갖는다는 점과 계획 수립 후 변경이나 장애요

인 발생 등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- 또한,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, 대상 노후시설물별(교량, 터널, 철도, 건축물, 상·하수도 등)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
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약칭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) 신설 건(안 제8조)

- 현행 조례 제8조의 실무협의회의 당초 설치목적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총괄본부, 도시교통본부, 주택건축국, 시 투자기관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,
- 담당 공무원들 간에 업무의 효율적 소통을 위해 여러 실·국·본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려 했던 것이나, 본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성능개선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이를 폐지하고,
- 대신에 비상설 기구로 ‘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약칭 ‘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’)'를 신설함으로써 성능개선위원회의 상위에서 ①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최종 조정 및 결정, ② 종합관리계획 시행 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, ③ 종합관리계획 변경, ④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을 관장토록 하려는 것으로,

-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 1,2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, 그리고 관련 실·국·본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도시기반시설 최고의 정책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

[참고]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신설안

- 안 제8조(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이하 '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 1·2 부 시장이 된다.
-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 2.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
 3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
 4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
 5.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-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 2.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
 3.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)
 4.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(이하 ‘위원’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

괄정책위원회(이하 ‘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 1·2 부시장이 된다.

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2.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
3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
4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
5.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
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2.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
3.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)
4.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 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

제10조 중 “성능개선위원회 회의”를 “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성능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<u>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</u> 노후기 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(이하 '성능개선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</u>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<u>구성한다</u>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<u>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한다)</u>은 시 관계부서의 부장직이 되고,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.</p> <p>④、⑤ (생략)</p> <p>⑥ <u>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</u>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<u>신 설</u>〉</p>	<p>제7조(성능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</u>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위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、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</u>. ⑦ <u>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</u>.</p>

제8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(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)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.

제8조(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(이하 '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 1·2부시장이 된다.

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2.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 의 장
3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
4.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
5.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
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
2.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3.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(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)

4.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-----

-----.